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9160
----------	-------

제안연월일 : 2019. 3.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심사 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691호	송옥주의원	'17.2.17.	'17.9.18.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 '19.3.11.)
	제15732호	박경미의원	'18.9.21.	'18.11.8.	
	제18893호	정병국의원	'19.2.28.	'19.3.11.	

나.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19.3.11.)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해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등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와 함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의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생점검 실시와 위생점검 결과·보완 조치의 공개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며,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유치원 및 초·중·고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안 제4조 제2항 후단).

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다. 학교의 장은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4조3 및 제18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률 제15965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7조제1항에”를 “제4조의3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제7조제1항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된 수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측정된 수치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 ① (생 략)</p>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lt;후단 신설&gt;</p> <p>③ ~ ⑤ (생 략)</p> <p>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lt;후단 신설&gt;</p>	<p>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 <u>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p> <p><u>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u></p>

<신 설>

<신 설>

법률 제15965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7조제1항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관리 특

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률 제15965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경비 보조) -----  
-----  
-----제4조의3



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제7조제1항에-----  
-----  
-----.